



County of San Diego

닉 맥치오네, 팩시
(NICK MACCHIONE, FACHE)
국장

보건 복지청
공중 보건국

윌마 J. 우텐 의학박사
(WILMA J. WOOTEN)
공중 보건 책임자

3851 ROSECRANS STREET, MAIL STOP P-578
SAN DIEGO, CA 92110-3134
(619) 531-5800 • 팩스 (619) 542-4186

보건 책임관의 명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노출된 자의 격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 (COVID-19)의 확산은 공중 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San Diego County)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지역 건강 비상 사태와 재난 상황의 선포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는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감염 노출의 위협에 있으며 일부 사람은 나이 또는 기저 질환으로 인해 감염에 더욱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샌디에고 카운티(San Diego County)의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샌디에고 카운티의 보건 관리 책임자 (보건 담당관)는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의 격리가 요구됩니다.

가정에서의 사용 표면, 친밀한 동거인, 간병인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확진자 또는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한 다른 모든 사람과 격리해야 합니다. "밀접 접촉자"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확진자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지 48 시간 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의 접촉자를 의미하며 다음 사항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15 분 이상 6 피트 이내에 있었거나; 또는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체액 및/또는 비말 (기침 또는 재채기, 도구 공유 또는 동일한 용기에서 함께 마시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 무방비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 책임자는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 101040, 101030, 120175, 120215, 120220 및 120225 조에 따라 다음의 명령을 시행하는 바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진자와 모든 밀접 접촉자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1. 자택 격리 또는 다른 거주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지 14 일이 지난 때까지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집단 환경, 호텔 또는 다중시설 환경에 격리된 경우, 해당 환경 내에서 다른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격리 장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문서에 <https://covid19.ca.gov/img/EssentialCriticalInfrastructureWorkers.pdf>,

지정된 부문 운영의 연속성에 필요한 근로자는 바이러스(COVID-19) 증세가 없으면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직업/직책에 요구되는 적합한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2. 보건 책임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코로나 19 환자에 대한 노출에 따른 자택 격리자는 *코로나 19 밀접 접촉자의 자택 격리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이 지침을 다음에 나와있습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19%20Home%20Quarantine%20Guidance_Korean.pdf

3. 이 명령 하에서 승인된 자, 전문 의료인, 이 명령의 법 집행관, 보건 담당 대표를 포함하여 보건 담당관이 특별히 승인한 다른 모든 사람 또는 간병인을 제외하고 격리 대상자는 어느 누구와도 6 피트 이내에 접촉을 피해야합니다.
4. 귀하에게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코로나 19의 징후와 증상은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발열 또는 오한, 근육이나 몸살, 두통, 인후통,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 코막힘 또는 콧물, 구역질이나 구토, 설사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공중 보건 책임관의 격리 명령은 카운티의 코로나 19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Health%20Officer%20Order-Quarantine_Korean.pdf

이 명령을 위반 또는 준수하지 않으면 징역형, 벌금 또는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120275 및 120295 조)에 따라 둘 다의 경범죄 처벌의 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전파성,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 내 모든 법 집행관에 의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법 26602 및 41601,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101029 조).

따라서 명령은 발효되었습니다:



윌마 J. 우텐 의학박사(WILMA J. WOOTEN)
공중 보건 책임자
샌디에고 카운티(County of San Diego)

날짜: 2020년 7월 24일